

●법무부령 제1066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의 제목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성적 및 석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적”을 “성적 및 석차”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반환 사유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유의사항
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위 구체적 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반환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응시 후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법무부	➔	검토·확인 법무부	➔	수수료 반환 법무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이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7호, 2023. 12.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